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098-01

2020. 4.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구축 기초조사 -요약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 larg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features a circular design with concentric lines and a shaded segment. The letters 'KREI' are prominently displayed in the center of this graphic.

KREI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구축 기초조사」 과제의 최종 보고서 요약본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상 효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이 욱 직 (연구원)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2
-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현황

- 1.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5
-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12
- 3. 정부양곡할인 사업 15
- 4.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19
- 5.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24
- 6.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종합 29

제3장 타 부처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현황

- 1. 보건복지부 31

제4장 미국의 식품지원제도

- 1. 미국 식품지원제도 현황 49
- 2. 미국 개별 식품지원제도 51

제5장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과제

- 1. 법률 및 제도 기반 71
- 2. 유사·중복성의 판단 73

표 차례

제2장

〈표 2-1〉 취약계층의 영양 및 식생활 현황	6
〈표 2-2〉 식품류별 바우처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정도 평가	7
〈표 2-3〉 지원 대상 품목의 적절성 평가	7
〈표 2-4〉 가구원 수별 지급금액	8
〈표 2-5〉 소득 수준별 기준	9
〈표 2-6〉 정부양곡할인사업 지원 단가	16
〈표 2-7〉 2019년 복지용 쌀 공급 현황	16
〈표 2-8〉 성과지표	23
〈표 2-9〉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25
〈표 2-10〉 학교우유 급식률('18)	26
〈표 2-11〉 학교 우유급식 성과지표	26
〈표 2-12〉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비교	29

제3장

〈표 3-1〉 2020년 기준중위소득	32
〈표 3-2〉 2020년 수급자 기준	32
〈표 3-3〉 긴급복지지원 지원 내역	34
〈표 3-4〉 생계지원 지원금액	35
〈표 3-5〉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	37
〈표 3-6〉 시도별 아동급식지원 예산 및 단가	38
〈표 3-7〉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40
〈표 3-8〉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 예산	41
〈표 3-9〉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43
〈표 3-10〉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 예산 및 집행액(국비)	45
〈표 3-11〉 운영 형태별 사업장 수	47

〈표 3-12〉 지역별 사업장 수	47
〈표 3-13〉 운영 주체별 사업장 수	48
〈표 3-14〉 연도별 운영실적 통계	48
〈표 3-15〉 연도별 운영실적 통계2	48

제4장

〈표 4-1〉 미국 식품지원제도 개관	50
〈표 4-2〉 SNAP 연도별 예산	51
〈표 4-3〉 SNAP 수혜금액 결정 예시	52
〈표 4-4〉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의 구매 가능 식품	52
〈표 4-5〉 WIC 연도별 예산	54
〈표 4-6〉 NSLP 연도별 예산	57
〈표 4-7〉 NSLP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57
〈표 4-8〉 SBP 예산 사용 현황	58
〈표 4-9〉 SBP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58
〈표 4-10〉 연도별 특별우유프로그램 제공량과 지원액	59
〈표 4-11〉 연도별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 식사 제공 수와 지원액	60
〈표 4-12〉 연도별 TEFAP 제공량과 지원액	64

제5장

〈표 5-1〉 유사·중복성의 판단	73
〈표 5-2〉 우리나라 식품지원제도	74
〈표 5-3〉 개별 식품지원제도의 사업목표	74
〈표 5-4〉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75
〈표 5-5〉 유사·중복성 평가	76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9
〈그림 2-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체계	13
〈그림 2-3〉 과일간식 공급 체계	21
〈그림 2-4〉 우유급식 공급 체계	27

제3장

〈그림 3-1〉 긴급지원체계	36
-----------------------	----

제4장

〈그림 4-1〉 연도별 SNAP-Ed 예산(FY1992-FY2020)	53
〈그림 4-2〉 연도별 월평균 WIC 지원대상자 수	55
〈그림 4-3〉 연도별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 시설별 식사 제공 수	60

제5장

〈그림 5-1〉 농식품 지원제도 관련 부처 및 범류	72
------------------------------------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식품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 사업들이 부처 내에서도 주무과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다양한 농식품 지원사업의 영양개선 효과, 농산물 소비 및 수요기반 마련 등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간 효율적 연계가 요구되는 반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개별 사업들의 당초 사업목적 달성 및 개별 사업들의 고유한 특징 및 장점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함.
-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과 통합적인 연계를 통해 올바른 영양섭취 및 건강 식생활을 장려한다는 관점에서 영양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들 간 연계 및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양섭취, 식

생활, 건강 지원 관련 유사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내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과의 부처 간 통합적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임.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및 타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영양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들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사업들의 통합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으로 진행될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함.

2.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범위

- 이 연구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영양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지원사업들도 검토함.

2.2. 연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영양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 기초사항 조사

- 개별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 및 지원 대상
- 개별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 지원금액 및 사업추진체계

○ 지원 법적 근거

○ 사업간 비교분석 및 품목/지원대상자 측면에서 중복성 검토

□ 검토 대상 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성/가능성 진단

○ ‘식품지원프로그램(가칭)’으로 통합 운영 가능성 및 예상되는 장애요인 진단

□ 타 부처 식품지원사업(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및 미국 사례 검토

○ 타 부처 식품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 취약계층에 대한 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한 식생활교육과의 연계(교육 대상, 방법, 콘텐츠 등)

○ 미국 식품지원사업 운영 실태 검토

2.3. 연구 방법

○ 문헌 연구(사업계획서, 사업실적보고서, 정책 보고서 등)

○ 농식품부 통합운영 작업반 T/F와 협조(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해외사례 조사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1. 기대효과

-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제도의 개별 사업들을 기초조사하고,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통합운영이 필요한 경우 통합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추진될 연구과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3.2. 활용방안

- 개별 농식품 지원사업들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사업들의 통합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로써 활용함.
- 중장기 식품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현황

1.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1.1. 추진 배경

-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지원을 위해 연간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상당수 영양소 섭취가 권장섭취량의 50~80%대로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며, 식품소비 불안정성 및 비만 증가세
-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1.2. 추진 목적

-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균형잡힌 농식품을 공급받아 대상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수준과 건강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국내산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1.3. 지원 대상(잠정)

○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최대의 식품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를 중심으로 식품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중위소득 30~40% 미만, 3) 중위소득 40~50% 가구 또한 식품소비, 식생활, 영양/건강 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향후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2-1 취약계층의 영양 및 식생활 현황

단위: 원/월, %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 수급자	중위소득 30% 미만/ 비수급자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
식료품 및 비주류+주류+외식비	370,291 (100.0)	204,819 (55.3)	223,137 (60.3)	253,770 (68.5)	294,272 (79.5)	420,902 (113.7)
식생활 불안정 비중	4.1	32.3	10.1	9.2	7.4	2.0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8.2	19.2	8.0	11.9	9.5	7.2
에너지(ERR 대비 %)	99.7	86.6	93.3	90.5	96.5	101.7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13.9	35.4	26.6	23.2	17.1	11.3
저작불편	20.3	41.8	40.2	33.8	28.7	16.5
EQ-5D	0.95	0.82	0.88	0.90	0.93	0.96

주: EQ-5D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 된 기기임.

자료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2)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6년도 원자료 통합분석.

1.4. 지원 품목(잠정)

- 취약계층 및 지자체·기관 담당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지원 금액이 동일하다고 할 때 구매지원이 필요한 식품류로 쌀, 과일, 육류, 어패류, 채소, 우유·유제품·계란 등의 신선식품을 우선시하였음(표 2-2).¹⁾

표 2-2 식품류별 바우처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정도 평가

구분	쌀	채소류	과일류	육류	어패류	유제품·계란	잡곡류	곡물 가공품	빵·과자류	장류·조미식품
취약계층	4.39	4.16	4.22	4.39	4.07	4.11	4.01	3.71	3.36	3.63
지자체	3.43	3.28	3.38	3.60	3.37	3.36	3.09	3.20	3.00	3.01
기관	3.80	3.67	3.76	3.86	3.57	3.78	3.42	3.32	2.87	3.07

주: 5점 척도 기준.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177).

- 취약계층 부족 영양소 실태를 바탕으로 다소비식품과 취약계층의 바우처 지원 선호 품목 조사결과 등을 반영할 경우 쌀,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잡곡, 계란 등의 신선식품이 대상 품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표 2-3).

표 2-3 지원 대상 품목의 적절성 평가

구분	필요 영양소	다소비 식품	취약층 선호도	국내산 공급	물량대비 단가	섭취 편리성	타제도 비중복성	점수
쌀	○	◎	◎	◎	◎	○	△	17
채소	◎	◎	◎	◎	◎	△	○	18
과일	◎	○	◎	◎	○	◎	○	18
우유	◎	◎	◎	◎	○	◎	△	18
잡곡	◎	◎	◎	△	○	△	◎	16
계란	◎	◎	◎	◎	◎	△	◎	19
육류	◎	◎	◎	△	△	△	◎	15
가공/즉석식품	○	△	△	△	△	◎	◎	12

주: ◎ 매우 적절(3점), ○ 적절(2점), △ 부적절(1점)

자료: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2019: 162)의 일부를 수정.

1)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p 177.

○ 대상 품목으로서의 적절성 평가를 토대로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잠정) 선정함.

1.5. 지원 금액

○ 1인 1개월 기준 4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원수별 지급 금액은 OECD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함. 균등화지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시 적용한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거나, 가구원수의 제공근을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함<표 2-4>.

표 2-4 가구원 수별 지급금액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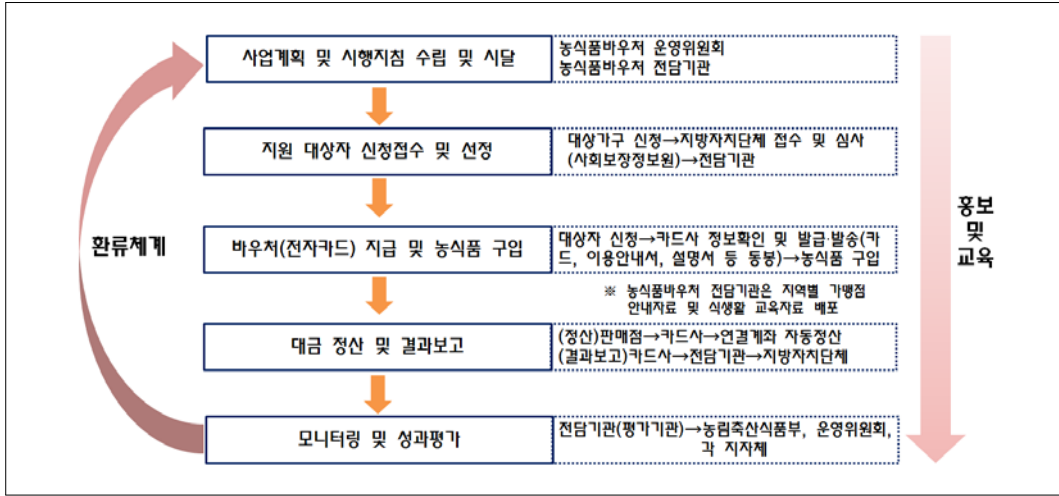
OECD지수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생계급여 방식	균등화지수	0.37	0.63	0.81	1.00	1.18	1.37	1.55	1.74
	4만원 기준	4만원	6만8천원	8만8천원	10만8천원	12만8천원	14만8천원	16만8천원	18만8천원
제공근고려 방식	균등화지수	1.0	1.41	1.73	2.00	2.24	2.45	2.65	2.83
	4만원 기준	4만원	5만7천원	6만9천원	8만원	9만원	9만8천원	10만6천원	11만3천원

자료: 직접 작성

1.6.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단계,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단계, 바우처(전자카드) 지급 및 농식품 구입 단계, 대금 정산 및 결과보고 단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환류체계 단계로 구성할 수 있음<그림 2-1>.

그림 2-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김상효 외(2019)

1.7. 2020년 시범사업 계획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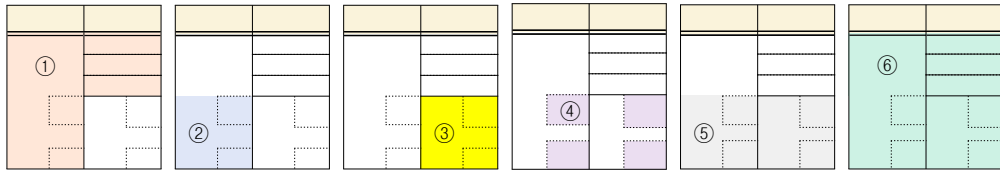
○ 지원대상: 지자체 6개소에 중위소득 50%이하(적용 후 소득수준별 분석)

표 2-5 소득 수준별 기준

구분 (평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재산소득 86만원/월 이하) 182만 가구(288만명)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4%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30%이하 (재산소득 51만원/월 이하) 108만 가구(167만명)	65세 이상	생계급여(식품비, 피복비, 통신비 등) 80만 가구(126만명)	65세 이상
	5세 이하		5세 이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소득수준별(안): ① 중위소득 50%이하(수급자 제외, 당초 복지부 협의안), ② 30%이하 (비수급자), ③ 30%이하(수급자), ④ 30%이하(노인, 아동)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지역별(안):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3가지 지역유형으로 구분
 - ➔ 3가지 지역유형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총 6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
- 지원금액: 4만 원 = 최저식품비(24만 원) - 사용가능 식품비(20만 원)
- 대상 지역: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3가지 유형
- 지원 품목 및 지급방식: 채소류/과일류/우유/계란, 전자카드(바우처) 형태로 현물 지원
- 통합연구 추진: 농식품 지원사업 전반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 '20년 예산 35억원 중 지자체 시범적용(안): 29억원

1.8. 추진 경과

- 2012.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KREI, 이계임·황윤재·이동소)
- 2017.10.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KREI, 이계임·김상효·김부영)
- 2018.02.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농식품부,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
- 2019.02.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실증 연구(농식품부,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운·한정훈)

- 2019.11. 농식품 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농식품부, 김상효·이계임·임소영·허성윤·이욱직)
- 2020.0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범사업전담기관으로 선정
- 2020.04. 통합연구 수행기관 입찰 중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2.1. 추진 배경

- 국민의 안전과 행복,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해야할 국가의 책무
-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에 기반한 고투입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농업으로의 전환 필요

2.2. 추진 목적

- 미래세대²⁾의 건강 확보를 위해 현재 학교급식 수준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대학생, 군인, 신혼부부, 임산부로 확대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함.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확대

2.3. 지원 대상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를 발급 받은 임산부 또는 그 밖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²⁾ 태아·신생아부터 성장기를 거쳐 2세를 임신·출산하기까지의 연령대로, 유해물질 노출에 특히 민감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2.4. 지원 품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 농·축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식품 등

2.5. 공급 체계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함<그림 2-2>.

그림 2-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시범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추진

2.6.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24회 이내)

2.7. 예산 및 지원 근거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예산규모: 9,060백만 원(국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등

2.8. 추진 경과

- 2012.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KREI, 이계임·황윤재·이동소)
- 2019.11.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도입방안 연구(KREI, 정학균·김상효·홍연아·추성민)
- 2020.4.(예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활성화 방안연구(농식품부, 정학균·임영아·홍연아·추성민)
- 20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진행 중)

2.9. 전담 기관 및 교육 홍보

- 전담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 정부양곡할인 사업

3.1. 지원 대상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 수급자 52만 명에게는 92% 할인율을 적용하며, 차상위계층 13만 명을 대상으로는 60% 할인율을 적용함.

3.2. 지원 내용

- 정부양곡 구입 시 할인가격으로 공급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2,000원, 20kg 4,000원 각각 개인이 부담함(자부담율 8%)<표 2-6>.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0,100원, 20kg 20,000원을 개인이 각각 부담함(자부담율 40%).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³⁾ 1인당 월 10kg
- 공급 신청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³⁾ 가구원수 산정 기준: 보장가구에 속해있는 모든 가구원 수(단, 별도 가구로 보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표 2-6 정부양곡할인사업 지원 단가

단위: 원

구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000	2,000	23,0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100	14,900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0,000	4,000	46,0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00	3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별도 계좌(양곡대금 출납전용)’로 입금하거나 읍·면·동을 통해 현금으로 납부
- 복지용 쌀 공급현황: (‘15) 81천 톤 → (‘16) 79 → (‘17) 84 → (‘18) 94 → (‘19) 111

표 2-7 2019년 복지용 쌀 공급 현황

구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무료급식단체	경로당
대상	약 175만 가구	약 89만 명	약 4만 명	65,044개 소
지원량 (‘19년)	98천 톤 (약 65만 가구*)	0.7천 톤	0.8천 톤	11천 톤 (약 46천개 소)
추진시기	’02.2부터	’03.2부터	’02.9부터	’12년부터
공급가격 (‘19년 기준)	1,960/10kg 9,800원/10kg	25,700원	6,250원	50,970원
수요자 구입가격 (‘19년 기준)	1,960원/10kg (기초생활수급자) 9,800 (차상위계층)	25,700원	6,250원	50,970원
지원내용	양특회계 50%, 90%	양특회계 50%	양특회계 85%	복지부 25% 지자체 75%
비고	10kg/월/1인	1인/1식당/180g	1인/1식당/180g	연 6~7포/20kg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3.3. 공급 체계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하여 양정담당 부서에 수요량과 인수예정일 제출(18일까지)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 부서는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양곡 인도(출고)지시서 발부 및 출고지시
- 택배업체(농식품부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업체)는 출고지시서에 의해 지정창고에서 양곡 인수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 부서는 택배업체가 지역별 배송기한 이후에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에 즉시 보고

3.4. 예산 및 지원근거

- 예산: 2020년 254억 원(택배비)
- 수급자: 92% 할인, 차상위: 60% 할인, 무료급식: 정액
- 지원근거: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3.5. 추진 경과

- 2002.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50% 할인공급 시작(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
- 2004. 차상위계층 등 생계곤란가구 3개월 한시 정부양곡 반값 공급(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
- 2005. 총리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05.7.6) 시 연장 결정
- 2008. 양특회계 손실 확대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복지부 이관(39억 원)
- 2009.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연중 공급 변경(198억 원)
- 2010.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사업 농식품부에서 복지부 이관(복지예산 일원화)
- 2016. 정상가격의 20% 할인(양특 부담) 공급하고 복지부 50% 할인 지원
- 2017. 정상가격의 20% 할인(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 공급하고 복지부 50~90% 할인 지원 확대
- 2019. 농식품부로 업무 이관(택배비 165억 원)
- 2020. 정상가격의 60~92% 할인 지원 (택배비 254억 원)

3.6. 전담 기관 및 교육 홍보

- 전담기관: 지자체, 공급업체
-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4.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4.1.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 상승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비만은 식생활의 불균형 및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 당뇨병과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유발함.
-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확대, 1인가구 증가, 해외여행으로 외국산 과일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지면서 국산 과일의 소비는 위축

4.2. 추진목적

-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을 시작으로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추진이 필요함.

4.3.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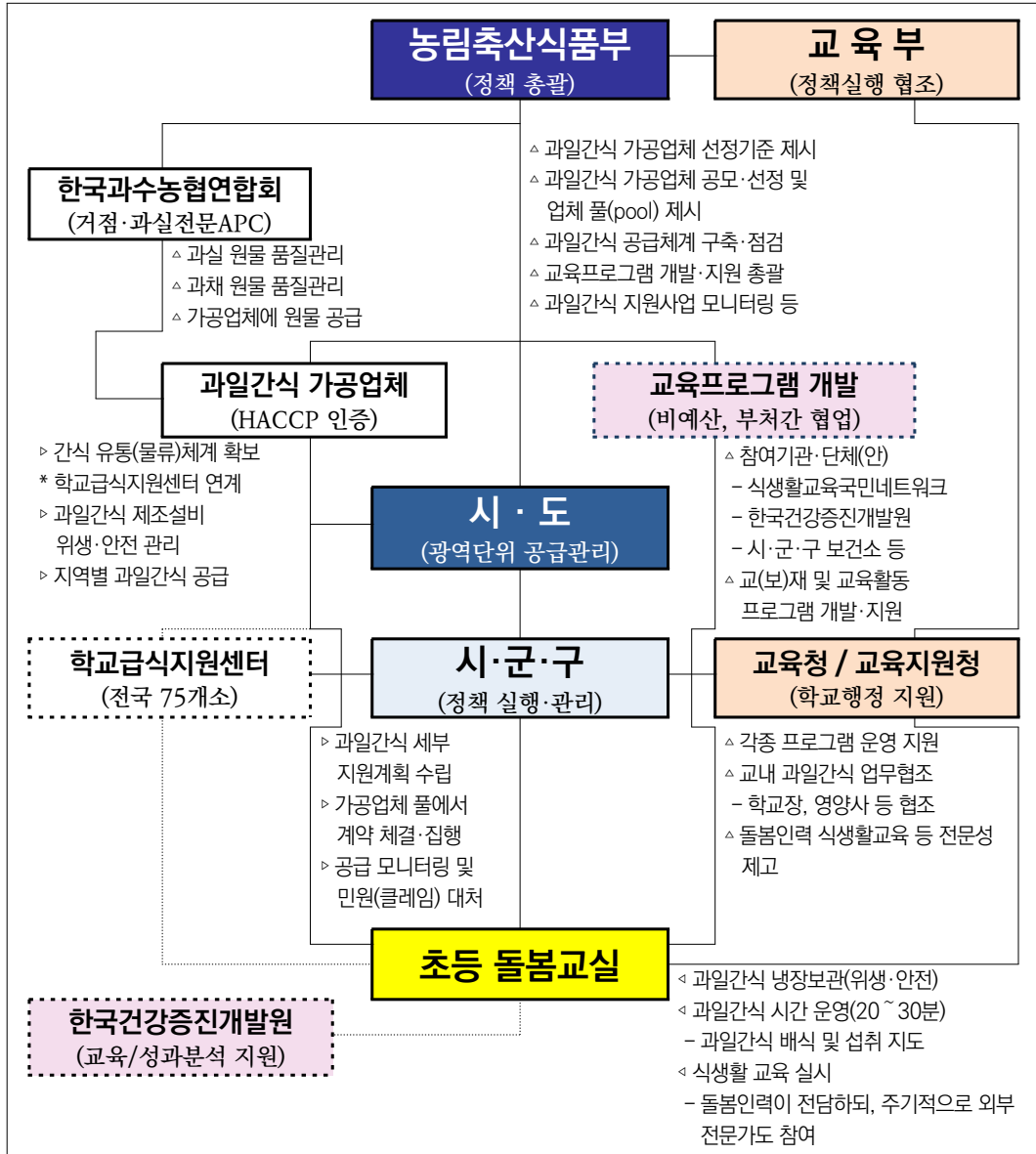
-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1~3학년) 전체 약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함.

4.4. 지원 품목

- (규격)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신선 과실·과채를 지원함.
- (형태) 국산 과일의 특성상 과일의 껍질 제거·절단, 용기별 배분 등에 따른 위생·안전이 확보(HACCP시설 가공)된 신선편이 형태를 지원함.
- (제품구성) 한 가지 품목을 하나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이 원칙, 복수 품목을 담는 경우 품목 간 맛·향·영양성분 조화 필요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한정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농산물 공급을 권장하고 있음.

4.5. 공급 체계

그림 2-3 과일간식 공급 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4.6. 공급 횟수

- 빵, 핫도그 등의 간식을 주 1회 이상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과일간식으로 대체하고, 1인당 연간 30회 제공하고 있음.

4.7. 예산 및 지원 근거

- 재원: 일반회계
- 예산규모: 7,200백만원(국비)
- 지원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과일간식 지원근거를 마련('18.9.18)

4.8. 추진 실적

- '18~'19년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계속 추진
 - (지원대상) 초등학교(5,469개)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전체(24만명)
 - (신청현황) 연 초등학교 5,019개 학생 224,403명 신청
 - (공급방식) 빵, 핫도그 등 간식을 컵과일(150g)로 대체, 1인당 연간 30회 제공
 - (지원예산) 국비 72억원/년(국비 50%, 지방비 50% / *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 성과지표
 - 지속 필요성: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으로 기존간식(빵, 핫도그 등)을 국산 제철 과일로 대체, 어린이 영양공급 및 식습관 개선 가능성 확인

- (식습관 개선) 초등돌봄 과일간식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산제철과일에 대한 섭취도 1」및 선호도2」 증가(목표대비 성과 달성)<표 2-8>
- (국민 체감도) 학부모, 학생 등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고, 농업계에서도 주요 농정성파로 선정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
- (수혜자) 학부모 96%, 학생 90.2% 등 과일간식 사업 필요성에 대해 긍정 답변
- (농업계) 문재인정부 농정 2년 성과에 ‘초등 과일간식 지원사업’ 선정(농민신문)

표 2-8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6년	'17년	'18년	'19년
① 과일간식 지원학생 국산 과일 선호도 증가(%)	((당해연도 국산과일 선호도-사업시행 전 국산과일 선호도)/사업시행 전 국산과일 선호도)×100	목표	신규	신규	5.0	6.0
		실적	신규	신규	5.8	6.25
		달성률(%)	신규	신규	116.0	104.2
② 과일간식지원 학생 수 (명)	과일간식 지원 신청 학생 수 합산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2
		실적	신규	신규	신규	22.4
		달성률(%)	신규	신규	신규	10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4.9. 전담 기관 및 교육 홍보

- 전담기관: 과수연합회, 가공업체
-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5.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5.1. 추진 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음용 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5.2.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5.3. 지원 품목

- (지원품목) 백색우유(국내산 원유100%), 가공유(국내산 원유 99%이상), 유제품(가공유, 치즈, 발효유 등)
 - 우유 용량: 200ml(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ml 이상)
 - 유제품 용량: 치즈(15g 이상), 발효유(80ml 또는 80g 이상)
- (지원횟수) 급식일 250일 내외(1월 1일~12월 31일)

5.4. 예산 및 지원 근거

- 재원: 축산발전기금
- 예산규모: 2020년 373억 원

표 2-9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학교우유급식	61,705	61,705	61,705	61,693	185,115
- 보 조	37,016	37,016	37,016	37,016	111,048
- 지방비	24,689	24,689	24,689	24,677	74,067

주: '20년 이후는 중기수치임(574천 명*430원*250일*3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지원한도: 430원/200ml
- 지원근거: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5.5. 성과지표

- 전체 학생 수 중 우유급식 대상자의 비중으로 급식률을 산정함<표 2-10>.

표 2-10 학교우유 급식률('18)

단위: 명, %

학교	2018 학생수					2018 급식률 (F=E/A)	2017 급식률 (G)	급식률 증감 (H=F-G)
	전체학생 (A)	급식학생						
		유상급식 (B)	지자체 무상급식 (C)	농식품부 무상급식 (D)	합계 (E=B+C+D)			
초	2,711,385	1,127,276	532,192	336,740	1,996,208	73.6	76.2	△2.6
중	1,334,288	324,977	18,913	126,746	470,636	35.3	36.2	△0.9
고	1,538,576	212,686	11,395	118,806	342,887	22.3	22.5	△0.2
특수	25,860	437	280	24,620	25,337	98.0	97.6	0.4
합계	5,610,109	1,665,376	562,780	606,912	2,835,068	50.5	51.1	△0.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유상급식 대상자도 포함하여 급식률을 산정한 것으로 무상급식 대상자들의 급식률을 확인할 수 없음<표 2-11>.

표 2-11 학교 우유급식 성과지표

단위: %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P)		
학교 우유급식률(%)	50.5	51.1	50.5	50.5	익년 3월	급식률(%) = (급식 학생 수/전체 학생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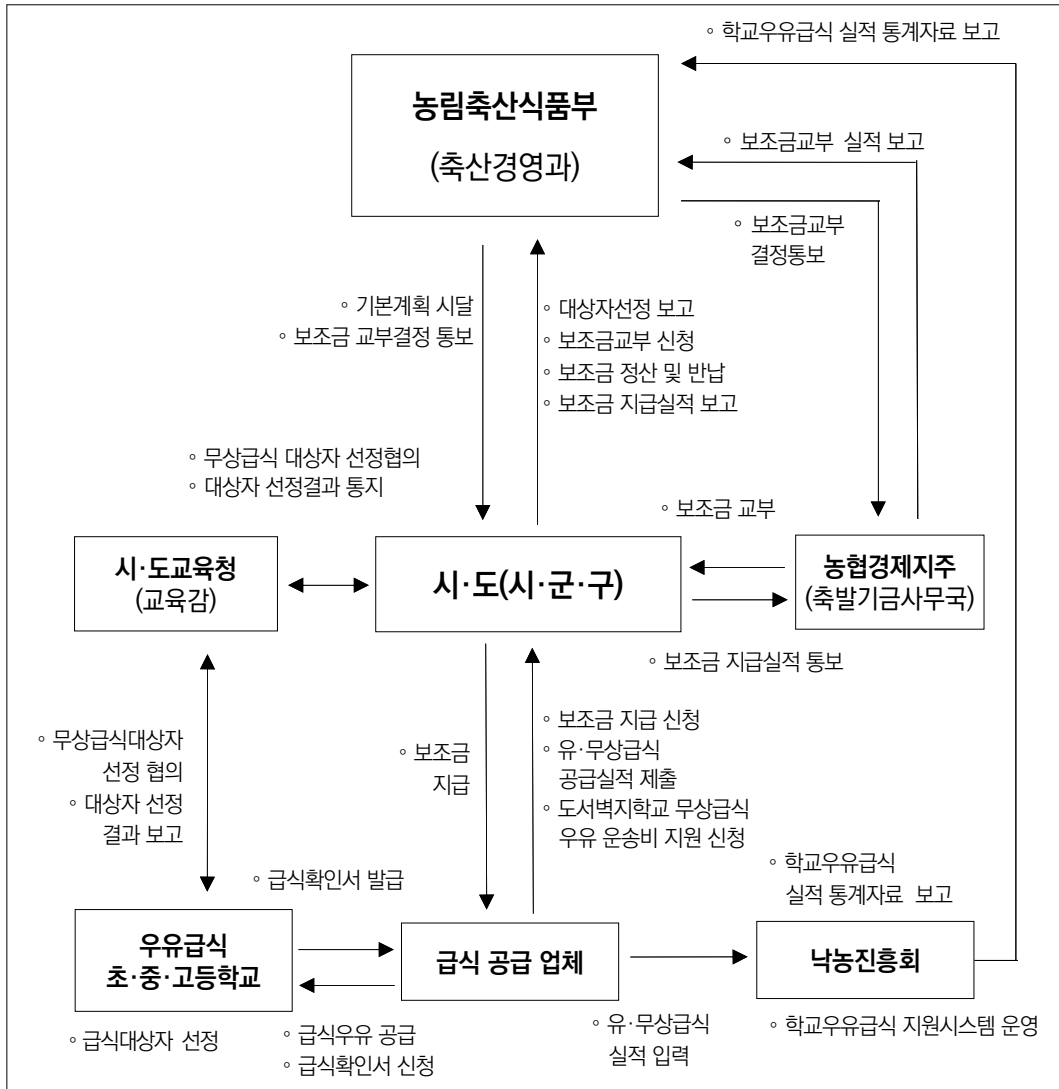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5.6. 사업 추진 애로사항

○ 학교우유급식에 따른 영양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운영체제 개선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음

5.7. 공급 체계

그림 2-4 우유급식 공급 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5.8. 추진 경과

- '81년도부터 초등학생에 우유 보조급식 실시
- '04.9월 국무조정실「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에 따라 중·고등학생에게도 보조급식 지원 결정
- '05년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원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
- '06년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확대
- '10년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
-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년)에 따라 중학생을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년)에 따라 고등학생을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20년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까지 확대

5.9. 전담 기관 및 교육 홍보

- 전담기관: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
-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6.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종합

○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지원제도를 표로 정리함<표 2-12>.

표 2-12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비교

구분	농식품 바우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정부양곡할인	학교우유급식
지원구분	가구	개인(어린이)	개인(임산부)	가구	개인(어린이)
지원대상	협업 중 (식품비 비수급 취약계층 대상)	전국초등 돌봄교실 (1~3학년) (확대 계획 중)	임산부 (임신부, 산모)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단체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교육 학생 등
지원품목	채소류, 과일류, 계란, 우유 등	과일/과채 (컵 과일 형태)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정부 양곡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백색우유, 가공유 등
공급체계	전자카드(바우처) 방식 수혜자 직접 구매	1인당 컵과일 형태 로 공급	인터넷 주문, 꾸러미 배달	음·면·동에 신청 사회적 조합 택배	학교에서 공급
공급횟수	수혜자 필요 시 직접 구매	연간 30회 (방과 후)	12개월, 24회 이내 (월 1~2회)	매월 1인당 10kg, 1식당 1인당 180g	연간 250일 (급식 시)
지원 단가	1인 월 4만 원 (시범사업)	2천 원 (학기 중)	월 4만 원 (최대 12개월)	(수급) 2,000원 (차상위) 10,100원 (급식) 6,250원 (10kg 기준)	430원/200ml
예산배분	국비 100(시범) 지방비 20~30(본사 업)	국비 50 지방비 50 (서울: 국비 30)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수급) 92% 할인 (차상위) 60% 할인 (급식) 정액	국비 60 지방비 40
관련예산	35억 원(시범)	72억 원(시범)	91억 원(시범)	택배비 254억 원	373억 원
	'18) 5억 원 '19) - '20) 35억 원	'18) 72억 원 '19) 72억 원 '20) 72억 원	'18) - '19) - '20) 91억 원	복지부('18) 834억 원 농식품부 택배비 '20년 254억 원)	'18) 370억 원 '19) 370억 원 '20) 373억 원
	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양특회계
관련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과 관련	식생활교육지원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관리법 (정부 관리 양곡의 판매)	낙농진흥법, 축산법
추진경과	복지부협업('18.11) '20 신규(국회 증액) 시범사업 예정	시범사업 3년 ('18~) 예타 중('19~)	복지부협업('19.8) '20 신규(참여 예산) 시범사업 진행	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19)	'81. 초등 보조 '05. 중·고등 확대
전담기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과수연합회 (가공업체)	(시범) 지자체 (공급업체)	지자체 (공급업체)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
교육 홍보	미정	정부, 지자체	정부, 지자체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토대로 추가 작성.

3

타 부처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현황

1. 보건복지부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추진경과)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이 되어 통합급여 지급방식이 아닌 대상가구의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됨.
- (지원대상) 20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표 3-1> 대비 각 급여별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가 수급자 선정 기준임.

표 3-1 2020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주: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표 3-2 2020년 수급자 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주 1)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2)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의료·주거급여는 대상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표 3-2).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지원근거)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법적 근거로 함.

○ (지원금액)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4인가구 기준 최대급여액: 2019년 138 → 2020년 142만원
- 시설생계급여: 2019년 24.2 → 2020년 25.8만원
- 국고보조율: 81.34 → 81.83%
- 제도개선(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5,577억원

○ (예산)

- 생계급여: ('19) 3조 7,508 [3조 7,617] → ('20) 4조 3,379억원(5,871억원, 15.7%)
* 추경 대비 [5,762억원, 15.3%]

○ (급여의 신청)

-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법 제21조제1항]
- 직권주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법 제21조제2항].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생활실태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군·구청은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1.2. 긴급복지지원

○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 방지 등을 위해 시행함.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근거)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을 법적 근거로 함.

○ (지원내용) <표 3-3>

표 3-3 긴급복지지원 지원 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 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 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 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6천 원, 중 352.7천 원, 고 432.2천 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 원/월 - 해산비(70만 원)·장제비(80만 원)·전기요금(50만 원 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주 1)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2)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3)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0 긴급지원사업안내

○ (지원금액) <표 3-4>

표 3-4 생계지원 지원금액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주: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0 긴급지원사업안내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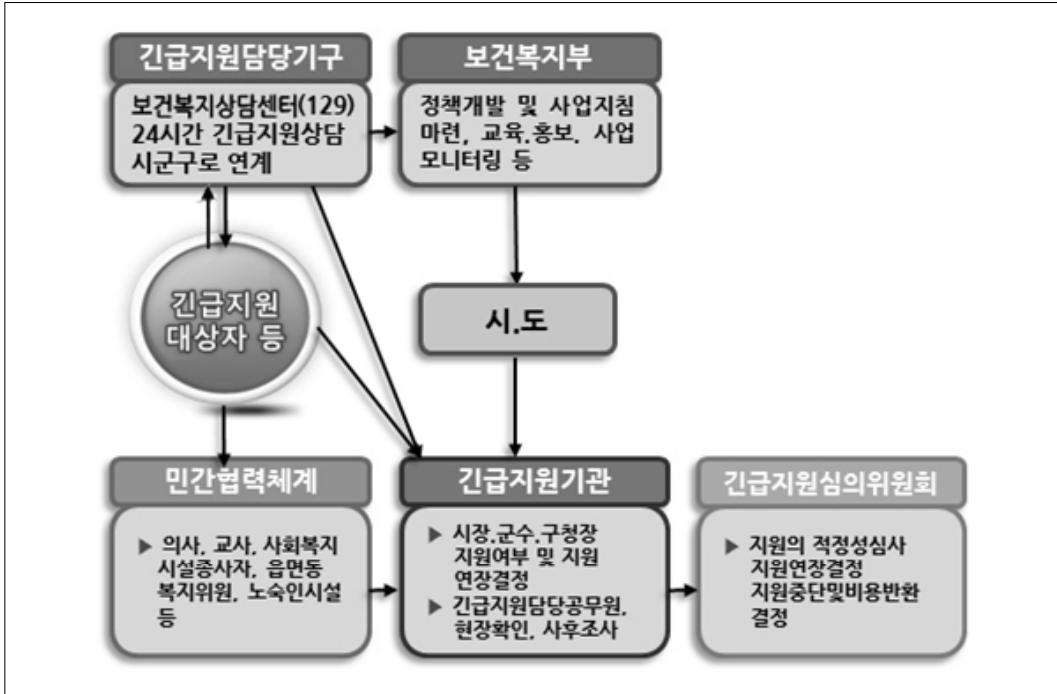
○ (예산) ('19) 1,422 [1,626] → ('20) 1,656억 원(234억원, 16.5%)

○ 긴급지원의 종류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긴급지원체계<그림 3-1>

그림 3-1 긴급지원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20 긴급지원사업안내

- (긴급지원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접수·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지원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요청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등 심의·의결
- (긴급지원 담당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상담(접수)·정보제공 및 기관·단체 등 연계
- (민간협력체계): 의사 등 의료기관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 대상자 조기발굴(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

1.3. 아동급식지원

○ (도입) 식사 또는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실시됨.

○ (추진경과)

- 사업 초기에는 석식만 지원
- 2001년, 조식까지 지원이 확대
- 2004년, 교육부에서 담당하던 방학, 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
- 2005년,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지방 이양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다만, 만18세 이상인 경우에 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만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표 3-5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인원	471,961	438,042	416,092	381,838	350,109	332,865	317,234	357,127

자료: e-나라지표, 아동급식지원 현황

○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제3조

○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 ① 학기 중 중식 지원: 교육청(학교급식)
- ②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교육청과 협의)
- ③ 방학 중 중식 지원: 지방자치단체

○ (예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함<표 3-6>.

표 3-6 시도별 아동급식지원 예산 및 단가

단위: 백만 원, 원

구분	지자체 예산(백만 원)	지원단가(원)
계	284,554	4,000-6,000
서울	43,556	5,000
부산	10,752	4,500
대구	13,012	4,000
인천	11,670	4,000-4,500
광주	12,270	4,500
대전	6,527	4,000
울산	5,742	4,500
경기	67,220	6,000
강원	10,321	4,000
충북	14,874	4,000
충남	10,534	4,000
전북	18,870	4,500-5,000
전남	8,889	4,000
경북	18,021	4,000
경남	24,115	4,000
제주	6,992	5,000
세종	1,189	4,000

자료: 급식뉴스(<http://www.newsf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49>), 2018.10.29

1.4. 노인급식지원

○ (도입) 1991년 3월부터 국가에서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함.

○ (추진경과)

- 1980년대까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1991년 3월부터 국가에서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설치·운영되기 시작
- 1999년 하반기 전국에 있는 모든 경로식당에 국고지원 시작
- 2000년 4월 8일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사업을 실시
- 2005년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지원대상) 경로식당 무료급식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급식기관: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급식기관으로 지정.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읍·면지역은 1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근거) 노인복지법(제4조의1, 제1항)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지원내용)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

○ (지원내용)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노인의 건강·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 국,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 (지원금액) 경로식당의 1식 단가는 2019년 기준 대구, 경북, 경남이 2,3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가 4,500원으로 가장 높았음(표 3-7).

표 3-7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단위: 명, 원

시·도	1일 평균 이용인원(명) ¹⁾						경로식당 1식 단가(원)		
	09년	10년	11년	12년	17년	19년	12년	17년	19년
서울	15,282	15,335	17,000	21,248	23,582	26,327	2,800	3,000	식당 3,500 배달 3,500 반찬 3,600
부산	6,424	6,527	8,000	8,000	30,000 ²⁾	7,150	2,300	식당: 2,500 배달: 2,500	식당 2,500 배달 2,500 반찬 3,600
대구	2,109	2,107	2,200	2,200	1,660	2,350	1,800	식당: 2,300 배달: 3,000	식당: 2,300 배달: 3,000
인천	3,697	3,765	4,811	5,118	5,300	5,307	식당: 2,000 배달: 2,500	식당: 2,000 배달: 2,500	식당: 2,700 배달: 2,700
광주	3,500	3,780	3,800	3,820	5,118	4,050	식당: 2,000 배달: 2,300	식당: 2,500 배달: 2,500	식당: 3,000 배달: 3,000
울산	2,800	3,100	3,740	3,980	5,921	6,916	식당: 2,300 배달: 2,500	식당: 2,300 배달: 2,500	식당: 2,500 배달: 3,000
대전	2,421	2,471	2,471	2,471	3,705	3,900	식당: 2,500 배달: 2,550	식당: 2,500 배달: 2,550	식당: 2,500 배달: 2,550
경기	19,211	19,556	25,352	24,067	30,222	46,073	식당: 2,300 배달: 2,800	식당: 2,500 배달: 3,000	식당: 2,700 배달: 3,500
강원	8,913	9,169	-	-	1,186	-	식당: 2,500 배달: 2,700	시군 마다 다름	시군 마다 다름
충북	3,090	3,090	3,216	3,216	3,725	3,724	3,000	식당: 3,500 배달: 3,500	식당: 3,500 배달: 3,500
충남	2,952	3,040	3,300	3,463	4,870	8,000	3,000	식당: 3,000 배달: 3,000	식당: 3,420 배달: 4,735
전북	4,215	4,215	4,570	5,943	4,000	4,300	2,500	식당: 2,500 배달: 3,000	식당: 2,500 배달: 3,000
전남	4,885	5,275	5,275	5,559	5,043 ³⁾	6,532	2,000	식당: 3,500 배달: 3,500	식당: 4,000 배달: 4,000
경북	6,000	6,000	6,000	6,125	8,183 ⁴⁾	8,559	2,000	식당: 2,300 배달: 3,000	식당: 2,300 배달: 3,000
경남	16,200	16,300	16,300	16,300	7,741	1,254	2,000	식당: 2,300 배달: 2,300	식당: 2,300 배달: 2,300
제주	526	545	1,630	1,105	1,940	2,040	3,500	식당: 4,500 배달: 4,500	식당: 4,500 배달: 4,500

주 1) 실이용인원과 무료급식 등록자수가 다를 수 있음.

2) 부산, 인천, 광주의 경우 1일 평균 이용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인원으로 조사함.

3) 경상남도의 경우 경로식당만 도에서 지원, 식사배달은 도의 지원 없이 시군별 진행

자료: 오민수 외(2019),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pp. 25-27 발췌

○ (예산) 노인급식지원사업의 예산은 급식이용 인원의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표 3-8>.

표 3-8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7년	19년
서울	11,786	11,834	12,833	16,813	21,100	28,992
부산	3,100	3,645	4,205	4,372	4,900	4,990
대구	383	395	395	395	340	1,340
인천	1,922	1,996	1,892	2,815	3,297	3,610
광주	1,500	1,909	2,219	2,337	3,845	3,645
울산	1,400	1,550	1,935	2,240	2,796	2,731
대전	1,162	1,186	1,817	2,065	2,189	1,680(시비)
경기	10,496	10,704	13,160	15,287	16,460	25,313
강원	3,728	3,861	3,861	3,861	도비: 0% 시군비: 100%	도비: 0% 시군비: 100%
충청(북)	2,781	2,781	2,894	2,894	3,911	도비: 0% 시군비: 100%
충청(남)	2,345	2,418	2,700	2,767	3,089	3,089
전라(북)	2,607	2,607	3,157	3,260	3,660	3,833
전라(남)	2,588	2,671	2,671	2,841	5,295	6,422
경상(북)	1,827	1,827	2,496	2,548	4,984	5,300
경상(남)	-	-	447	448	6,175	300
제주	730	820	777	944	1,496	도비: 0% 시비: 100%

주 1) 대전은 시비 75%, 구비 25%로 예산액은 시비 75% 기준 금액임

2) 경상남도는 도시락배달사업은 하지 않으며(시군에서 별도 추진), 무료급식사업은 도비 3억, 시군비 4.5억 매칭하여 추진

자료: 오민수 외(2019),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pp. 28

1.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도입) 2015.10.30에 사업 시행함.

○ (추진경과)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12.12월)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국정과제(62-1)로 확정('13.5월)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14.1~11월)
- '15.10.30. 사업 시행(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저귀 32천원·조제분유 43천원)
- '16년 지원단가 인상(기저귀 32천원→64천원, 조제분유 43천원 → 86천원)
- '17년 기저귀 지원 사업기간(생후 0~24개월) 확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족 양육아동 조제분유 지원 추가
- '18년 조제분유 지원대상 추가(산모의 의식불명, 영아 입양가정 등)
- '19년 자격확인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 '20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지원 확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 추가(산모의 유산 손상 등)

○ (지원대상)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 ~ 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자료: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 2020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예외 지원대상)

- 기본 지원대상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예외 지원은 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방침에 따라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전액 시·군·구비로 부담
-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

○ (지원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 (지원내용 및 금액) <표 3-9>

표 3-9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원)	비고
기저귀 지원	가 유형	64,000	예외지원 ²⁾ 라 유형과 동일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 유형	150,000	예외지원 마 유형과 동일
조제분유 추가지원 ¹⁾	다 유형	86,000원	예외지원 바 유형과 동일

주 1)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지원신청 시

2)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자체(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경우의 지원유형

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 2020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 (예산) 2019년 174 → 2020년 174억원

1.6.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6.1. 영양플러스사업

○ (도입) 2004년 영양취약계층 대상의 국가 영양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의 모델(안)을 근거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함.

○ (추진경과)

- 2004년, 사업안 마련: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영양지원제도 도입연구
- 2005년, 1차 시범사업 실시(3개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2006년, 2차 시범사업 실시 (11개 시·도 15개 보건소)
- 2007년, 3차 시범사업 실시 (13개 시·도 20개 보건소)
- 2008년, 전국 단위 사업 실시 (16개 시·도 153개 보건소)
- 2009년, 전국 16개 시·도 245개 보건소로 사업 확대 실시
- 2010년, 전국 16개 시·도 250개 보건소에서 사업 실시
- 2011년, 전국 16개 시·도 251개 보건소에서 사업 실시
- 2012년, 전국 17개 시·도 252개 보건소에서 사업 실시(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영양 분야’로 통합 추진
- 2018년,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시스템 구축 및 도입
- 2019년, 전국 17개 시·도 252개 보건소에서 사업 실시(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제외)

○ (지원대상)

- 영유아(만 6세(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 (지원근거)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지역보건법」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보충식품 공급: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총 6가지 식품패키지로 구분하고 한 달 분량을 월 1~2회 가정배달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임, 식품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기본으로 공급함.

○ (지원금액) 주 1~2회 제공 기준 월평균 7만원

○ (예산) 식품지원비 2019년 120억원<표 3-10>

표 3-10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 예산 및 집행액(국비)

단위: 백만 원

연도	예산	집행액
2016	12,020	11,278
2017	11,955	10,704
2018	12,178	11,786
2019	12,005	11,820

주: '13년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산출이 어려우며, '16년부터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 보충식품비 예산만 지자체 입력 결과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내부자료.

1.6.2. 건강과일바구니지원사업

○ (도입) 2011년 '취약아동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 시범사업' 으로 시작함.

○ (추진경과)

- 2011년 '취약아동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 시범사업' 으로 시작
- '건강과일바구니'라는 사업명칭으로 2012년까지 시범 실시
- 2013년, 영양분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지침이 지자체에 시달
- 현재는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없이 지자체 별도 시행

○ (지원대상) 희망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 청소년
- 교내 「초등 돌봄교실」 이용 어린이 등
- 지역아동센터 우선 선정기준

○ (지원근거)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지역보건법」

○ (지원내용) 건강간식 제공

- 제공 간식의 종류는 단가 범위 내에서 제철식품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의 기호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가 번갈아 제공될 수 있도록 함.

1.7. 푸드뱅크

○ (도입) 푸드뱅크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듬해 6월에 보건복지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시작됨.

○ (추진경과)

- '98. 1: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00. 5: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보건복지부)
- '01. 8: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구축·운영(www.foodbank1377.org)
- '02. 7: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 구축·운영
- '06. 3: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06.3.24. 공포, '06.9.25. 시행)
- '09. 9: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개소(대전 유성구 대정동 302-1)
- '11. 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1.4.28. 공포·시행)
- '15.12: 차세대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구축
- '16.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2.3. 공포, '17.2.4. 시행)
- '18. 7: 기부식품등 중앙물류센터 이전(세종시 연동면 연청로)
- '18. 12: 전국푸드뱅크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운영

○ (주요현황) 2019.12.31. 기준

표 3-11 운영 형태별 사업장 수

구분	계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기 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 소	454	1	17	308	128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표 3-12 지역별 사업장 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광역 지원센터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기초 푸드뱅크	5	18	12	12	15	12	7	1	73	21	26	20	18	25	21	20	2	308
기초 푸드마켓	30	16	8	14	2	8	2	0	17	1	5	6	7	3	3	4	2	128
계	36	35	21	27	18	21	10	2	91	23	32	27	26	29	25	25	5	453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표 3-13 운영 주체별 사업장 수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시·군·구	개인	비영리 민간단체	계
개소	199	16	57	13	4	8	89	67	453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표 3-14 연도별 운영실적 통계

단위: 명, 천 건, 천 개, 백만 원

연도	접수				제공			
	총기부인원	기부건수	수량	금액	총이용인원	이용건수	수량	금액
2016	15,450	835	157,879	178,316	308,965	9,708	152,362	171,489
2017	15,328	877	202,746	202,803	290,381	10,756	191,163	188,875
2018	15,300	843	246,741	219,849	314,454	12,348	253,170	217,994
2019	15,770	853	138,136	236,548	326,239	13,696	433,584	228,944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 내부자료

표 3-15 연도별 운영실적 통계2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기부액	기부자수	이용자	개인이용자			단체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시설, 단체
2016	178,316	15,450	308,965	116,686	46,833	130,121	15,325
2017	202,803	15,328	290,381	105,001	42,777	128,120	14,483
2018	219,849	15,300	314,454	114,710	45,559	139,849	14,336
2019	236,318	15,770	326,239	117,432	49,442	143,344	16,021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 내부자료

4

미국의 식품지원제도

1. 미국 식품지원제도 현황

■ 미국 식품지원제도 개관

- 미국은 식품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이 식품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노인청도 고령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식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표 4-1>.
- 각 프로그램별 식품을 지원하는 방법은 대상자(예: 임산부, 아동, 고령자), 자격 요건,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예: 일반 식품, 간편 식품) 등의 차이를 보임.
- 농무부 농업법 산하에 있는 6개의 식품 지원사업들은 전체 식품 지원사업 예산의 67.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여성/영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양프로그램들이 31.3%를 차지하는데, 전체 예산의 99%를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이 주관하고 있음.

표 4-1 미국 식품지원제도 개관

단위: 억 원

구분	프로그램	예산	국내 유사사업			
			사업명	예산		
농무부 식품 영양 서비스국	농업법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SNAP)	673,480	생계급여 농식품바우처지원	16,093 35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TEFAP)	8,467	긴급지원(생계지원)	614	
		지역식품프로젝트(CFP)	57 ^{c)}			
		농산물보충식품프로그램(CSFP)	2,859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FVP)	1,944 ^{c)}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144	
		고령자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SFMNP)	237 ^{c)}			
	WIC&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여성·영유아·아동 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 (WIC)		결식아동 급식 지원	2,846	
				영양플러스 사업	281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11	
				친환경농산물꾸러미	9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 유 지원	174	
	소계	14개 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	20,662	
보건 복지부 노인청	고령자법 프로그램 (OAA)	집단영양프로그램(CNP)	5,597	노인급식	920	
		가정배달영양프로그램(HDNP)	2,840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GNASNS)	387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NSIP)	1,809			
	소계	4개 프로그램	10,633	1개 프로그램	920	
총계	17개 프로그램	1,015,065	11개 프로그램	21,582		

주 1) 환율 1,130원/달러 적용.

2) c) 미의회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예산이 반영된 수치임.

3) 2018-19년은 노스캐롤라이나 데이터 missing

4) 생계급여, 긴급지원 중 식품비 기준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에 식품비 비중인 37.1%로 계산함.

자료: USDA(2020), HHS-ACL(2020), Aussenberg and Colello(2019), Aussenberg and Billings(2019).

○ 미국의 식품지원 사업은 농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1940년대 시범 사업이었던 ‘푸드스탬프’는 1달러로 어떤 식품이든 구매할 수 있는 ‘오렌지 스탬프’와 동시에 잉여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50센트 상당의 ‘블루 스탬프’를 제공하였음.

2. 미국 개별 식품지원제도

2.1.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SNAP) 및 SNAP-Ed

2.1.1. SNAP

- (도입) 1939년 대공황 시기에 첫 시도 후 1964년 제도화 됨.
- (추진체계) 미국 USDA의 식품영양소비자국(FNCS) 소속인 식품영양서비스국(FNS)에서 학교급식 등 타 영양프로그램과 함께 SNAP을 담당하고 있음.
- (결산 기준) '19년 582억 달러(약 69.2조 원)〈표 4-2〉

표 4-2 SNAP 연도별 예산

연도	대상자 (천명)	인당 월평균지원액 (달러)	총 지원액(①) (백만 달러)	관련비용(②) (백만 달러)	총 비용(①+②) (백만 달러)
2015	45,767	126.81	69,645.14	4,301.51	73,946.65
2016	44,220	125.40	66,539.27	4,374.28	70,913.55
2017	42,228	125.73	63,711.05	4,463.50	68,174.55
2018	39,431	124.68	58,996.50	4,528.08	63,524.58
2019	34,474	129.96	53,761.25	4,516.11	58,277.37

주 1) 관련비용: 이 표는 결산/비용 관련 수치로 연방정부 비용은 포함되었으나 주정부 비용은 불포함

2) 2018-19년은 노스캐롤라이나 데이터 missing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pd/overview>), keydata report

○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시 지원

- ①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2,250달러까지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며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구에 있는 경우에는 3,250달러까지 허용한도가 늘어남. SSI(생활보조금)나 TANF(빈곤가정임시지원), 퇴직연금 등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 ② 총소득(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0% 미만), 순소득(SNAP 공제금액을 뺀 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00% 이하)인 가구. 한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이 생활보조금이나 빈곤가정임시지원을 지원받는 수혜자인 경우 자동적으로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

의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됨. 소득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총소득조건과 순소득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것을 뜻하며, 장애인보조금을 받는 가구는 순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됨(순소득 = 총소득-총공제액).

- ③ 1) 일자리 등록, 2) 자발적으로 일을 관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을 것, 3) 일자리가 주어진 경우 고용될 것, 4) 고용/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 등의 근로조건이 있음.
- ④ 이민신분 조건으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거나, 장애인보조금 혜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18세 이하의 아동 등 합법적으로 이민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SNAP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식비 기준금액과 월 소득 30%의 차액만큼을 매월 지원<표 4-3>

표 4-3 SNAP 수혜금액 결정 예시

	1인 가족	2	3	4	5	6	7	8	추가1인당
월 최대 책정액	194불	357	511	649	771	925	1,022	1,169	+146

주: 수익의 30%를 식비로 지출한다고 가정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snap/fact-sheet-resources-income-and-benefits>; 2017.12.12.); 이계임·김상효·김부영(재인용). 2017. p. 122.

○ (식품구입처) '11년 기준 231,000개 매장참여(요건 충족 시 참여가능)

표 4-4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의 구매 가능 식품

구분	식품
구매 가능	*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한 일체의 식품 - 비알코올음료, 스낵, 탄산음료, 사탕류 및 얼음, 그리고 네 가지 기본식품군[빵/곡류, 우유 및 유제품, 과일 및 채소류, 육류 및 생선, 가금류) - 식용으로 재배되는 씨앗 및 식물
구매 불가	* 맥주, 포도주, 주류 또는 담배류 * 판매 시점에 이미 조리된 음식 * 업소매장 내에서 먹는 음식 * 비타민 또는 의약품 * 애완동물 먹이 * 티슈, 비누, 화장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같은 비식품류

자료: 이계임 외(2012).

○ (모니터링) '16년 11월 수혜자들의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이 처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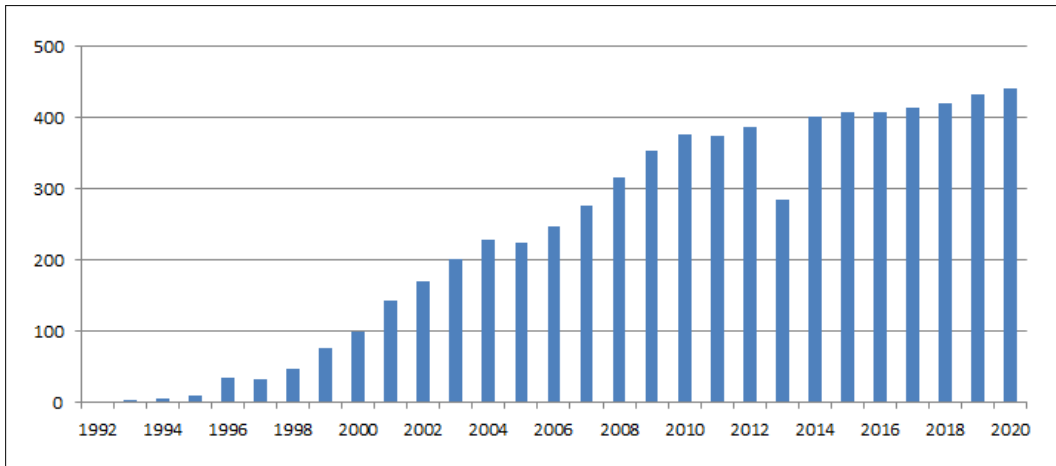
○ (경제효과) 농식품 수요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2.1.2. SNAP-Ed: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Education

○ (현황) '92년 7.6억 원으로 시작하여 연평균 28.2%씩 꾸준히 증가, '20년 4,983억 원 <그림 4-1>.

그림 4-1 연도별 SNAP-Ed 예산(FY1992-FY2020)

단위: 백만 달러



주: FY 2020 예산은 추정치임.

자료: USDA/FNS(<https://snaped.fns.usda.gov/program-administration/funding-allocations> 2019.08.16. 방문).

○ (추진체계) USDA의 식품영양서비스국이 SNAP-Ed 교육프로그램을 총괄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각 주(state)별로 각 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원대상) SNAP-Ed의 대상자는 SNAP 참가가구와 SNAP 참가가구와 비슷한 저소득층임.

2.2. 여성·영유아·아동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WIC) 및 WIC 파머스마켓 영양프로그램 (WIC-FMNP)

2.2.1.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여성·영유아·아동 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

- (도입) 1972년 모유 수유 여성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후, 1975년 제도화(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까지 확대)
- (추진체계) SNAP의 경우와 유사(FNS), 연방정부가 WIC 참여자들이 거주하는 주(States)에 자금을 지원
- (결산/비용 기준) '19년 51.8억 달러(약 6조 2천억 원)<표 4-5>

표 4-5 WIC 연도별 예산

연도	대상자 (천 명)	인당 월평균지원액 (달러)	총 지원액(①) (백만 달러)	관련비용(②) (백만 달러)	총 비용(①+②) (백만 달러)
2015	8,024	43.37	4,176.0	2,063.9	6,239.9
2016	7,696	42.77	3,949.6	2,070.8	6,020.4
2017	7,286	41.24	3,606.1	2,089.9	5,696.0
2018	6,870	40.96	3,376.6	2,068.6	5,445.2
2019	6,400	40.92	3,142.3	2,041.9	5,1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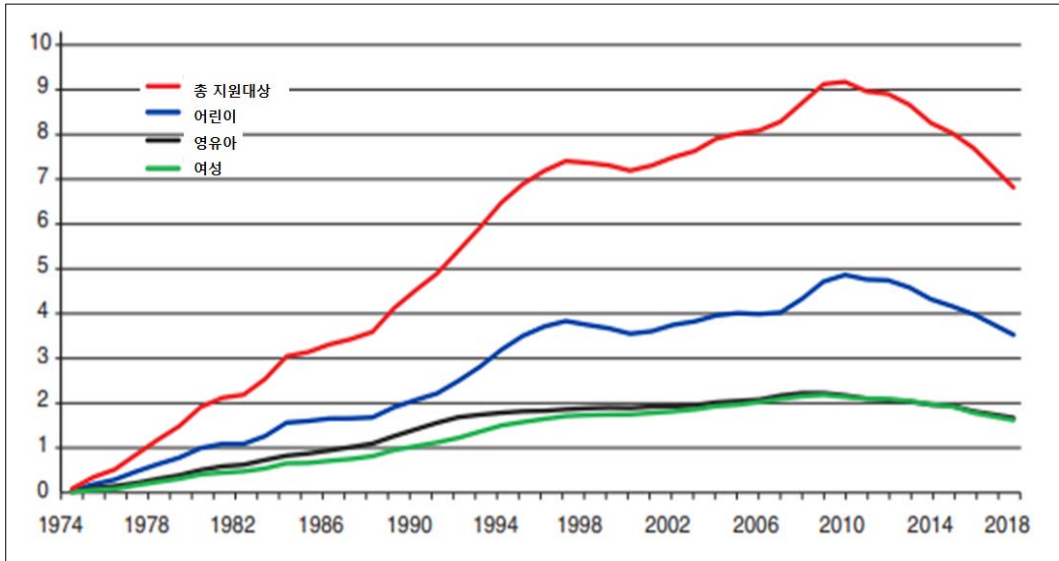
주 1) 관련비용: 주 행정비용, 영양 서비스 및 관리 (NSA) 보조금, 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 등
 2) 2019년은 확정 수치 아님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pd/overview>), keydata report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85%보다 낮은 임신·수유부, 수유하고 있지 않은 출산부, 5세 이하 영·유아

그림 4-2 연도별 월평균 WIC 지원대상자 수

단위: 백만 명



자료: Oliveira, Victor(2019).

- (식품지원) WIC에서 지원하는 식품은 저소득 임산부, 출산모, 영아, 5세 이하 유아의 영양 필요를 고려하여 패키지별 다양한 구성
- (식품구입처) '20년 현재 기준 157,450개 매장참여(요건 충족 시 참여가능)
- (모니터링) WIC 담당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거주지 증명, 이종수혜), 고위험 벤더 관리, 부정사용 벤더에 영구 배제, 농무부 식품영양국은 연례보고서를 작성

2.2.2. WIC-FMNP(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 (현황) 1992년에 WIC 참여자가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지원액은 2019년 209억 원임.
- (추진체계)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파머스 마켓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을 추가로 발급받아 파머스 마켓, 개인 농가,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구매

2.3. 어린이영양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s: CNP)

- CNP는 1)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 2) 학교아침프로그램, 3) 특별우유프로그램, 4) 어린이/성인 돌봄식품프로그램, 5) 여름식품서비스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
- 한편, “Team Nutrition”이라는 협의체가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FNS)에 구성되어 있으며, 이 협의체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돌봄교사들 대상 식사서비스/영양교육에 대한 훈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과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위한 학교/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CNP의 효과적인 운영을 추진함.
- “Team Nutrition”과 더불어 “지역사회식품시스템”이라는 부서의 지원을 통해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CNP 프로그램들의 운영자들이 로컬푸드를 활용하고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2.3.1.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 (도입) 1946년 트루먼 정부가 학교급식지원법(Richard B. Russel National School Lunch Act)에 따라 제도화 함.
- (추진체계) 미국 USDA의 식품영양서비스국(FNS)에서 연방 범위에서 NSLP 담당, 각 주별 사무처가 실무 담당, 공립학교 또는 비영리사립학교 등 학교 단위로 신청
- (예산) ‘19년 141억 달러(약 16조 원)<표 4-6>

표 4-6 NSLP 연도별 예산

연도	월평균 참여아동 수(백만 명)				총 지원횟수 (백만회)	무료/급식할인 비중(%)	지원액(백만 달러)	
	무료급식	급식할인	전액 납부	전체			현금지원	현물지원
2015	19.8	2.2	8.5	30.5	5,005.4	72.6	11,696	1,307
2016	20.1	2.0	8.2	30.4	5,052.9	73.3	12,259	1,311
2017	20.0	2.0	8.0	30.0	4,891.5	73.6	12,251	1,393
2018	20.1	1.8	7.7	29.6	4,865.7	74.4	12,580	1,243
2019	20.1	1.7	7.7	29.5	4,854.5	74.1	12,834	1,330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pd/overview>), keydata report

- (지원대상) SNAP참여아동, 노숙아동, 가출아동, 이주아동, Head Start Program 참여 아동 또는 그에 준하는 지원프로그램 참여 아동, 빈곤선의 185% 이하 소득 아동
- (지원금액) 지원유형별로 최소 0.32달러에서 5.54달러까지 매 끼니 급식비 지원<표 4-7>

표 4-7 NSLP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지원유형	48개주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전액 납부	끼니 당 \$0.32	끼니 당 \$0.53	끼니 당 \$0.38
급식할인	끼니 당 \$3.01	끼니 당 \$5.14	끼니 당 \$3.60
무료급식	끼니 당 \$3.41	끼니 당 \$5.54	끼니 당 \$4.00

주: 전전년도 무료급식 및 급식할인 비중이 60% 미만인 학교 기준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

- (효과) 수혜아동의 영양섭취량 증가(Gleason and Suitor 2003), 식품안정성 제고, 건강 및 비만율에 긍정적 효과, 학습에 필요한 영양적 요구 충족(FRAC)

2.3.2. 학교아침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 SBP)

- (도입) '66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75년 영구 프로그램으로 추진
- (예산) '19년 45억 달러(약 5조 3천억 원)<표 4-8>

표 4-8 SBP 예산 사용 현황

연도	월평균 참여아동 수(백만 명)				총 지원횟수 (백만 회)	무료/급식할인 비중(%)	지원액 (천금, 백만 달러)
	무료급식	급식할인	전액 납부	전체			
2015	11.05	0.90	2.10	14.05	2,334.12	85.2	3,892
2016	11.52	0.86	2.19	14.56	2,448.34	85.1	4,212
2017	11.60	0.84	2.23	14.66	2,412.86	85.0	4,252
2018	11.75	0.77	2.17	14.68	2,422.44	85.4	4,396
2019	11.76	0.74	2.23	14.73	2,441.72	85.0	4,527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

- (지원대상) SNAP참여아동, 노숙아동, 가출아동, 이주아동, Head Start Program 참여 아동 또는 그에 준하는 지원프로그램 참여 아동, 빈곤선의 185% 이하 소득 아동
- (지원금액) 지원유형별로 최소 0.31달러에서 5.54달러까지 매 끼니 급식비 지원<표 4-9>

표 4-9 SBP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지원유형	48개주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전액 납부	끼니 당 \$0.31	끼니 당 \$0.47	끼니 당 \$0.36
급식할인	끼니 당 \$1.90	끼니 당 \$3.23	끼니 당 \$2.27
무료급식	끼니 당 \$2.20	끼니 당 \$3.53	끼니 당 \$2.57

주: 전전년도 무료급식 및 급식할인 비중이 60% 미만인 학교 기준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

2.3.3 특별우유프로그램(Special Milk Program, SMP)

- (추진체계)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USDA-FNS)이 주관하는 특별우유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주정부의 교육부가 학교의 동의를 얻어 관리 및 운영함.
- (지원대상) 연방정부의 다른 아동영양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와 보육시설이 지원대상임.

- (지원품목) 학교는 주정부나 해당지역의 기준을 만족하는 백색시유 혹은 가공우유 (가향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 우유, 발효버터밀크 등)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고, 모든 우유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함유되어야 함.
- (예산) 1960년대 후반에 최고조에 달했던 특별우유프로그램 제공량은 이후 우유를 포함한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과 학교아침프로그램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임. 2019년 기준 79억의 예산으로 3,500만 반잔(Half-Pint)의 우유가 특별우유프로그램에서 지원됨<표 4-10>.

표 4-10 연도별 특별우유프로그램 제공량과 지원액

단위: Half-Pint, 백만 달러

연도	총 제공량(Half-Pint)	총 지원액(백만 달러)
2015	47	11
2016	45	9
2017	41	8
2018	38	8
2019	35	7

자료: USDA(2020).

2.3.4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CACFP)

-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은 어린이복지시설, 방과후프로그램, 그리고 성인복지 시설과 같은 보호시설의 아동과 성인,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추진체계) 미국 농무부에 의해 각 주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주로 주정부 교육 기관에서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이 운영됨.
- (지원대상) ① 12세 이하 아동, ② 이민 노동자 가구 내 15세 이하 아동, ③ 18세 이하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등록된 아동, ④ 긴급 거주지에 거주 하고 있는 18세 이하 아동, ⑤ 방과 후 보호시설에 등록된 18세 이하 아동, ⑥ 성인 보호 시설에 등록된 성인, 장애인, 노인임.

○ (예산) 매 끼니당 25센트에서 2.8달러를 지원함. 2019년을 기준으로 하루 450만 명의 어린이와 13만 명의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총 20억 5,000만 끼니의 식사가 제공 되었음<표 4-11>.

표 4-11 연도별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 식사 제공 수와 지원액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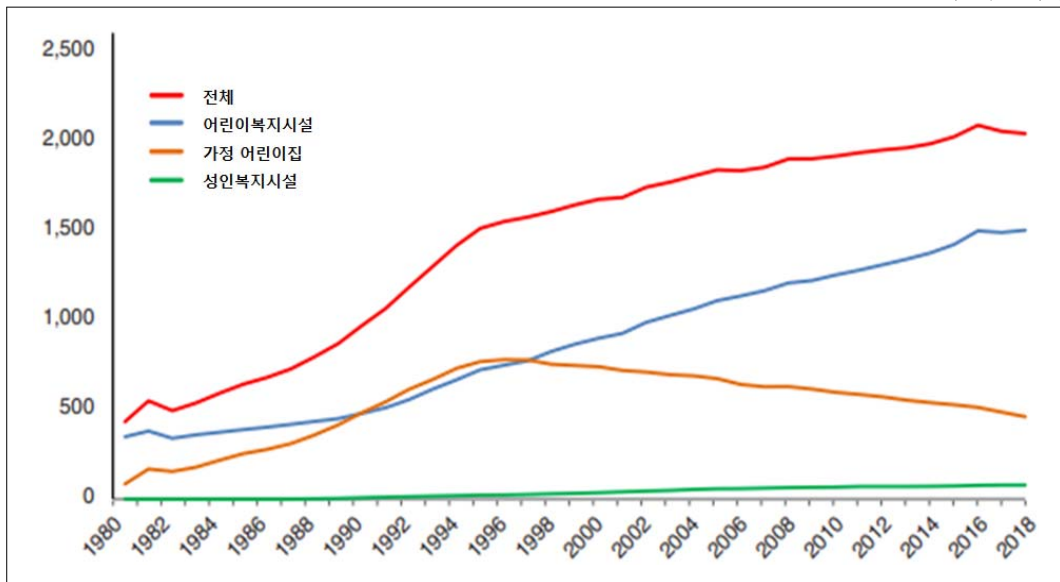
연도	하루 평균 수혜자 (천 명)	식사 제공 수(백만)				현금지원 (백만 달러)	농산물 지원 (백만 달러)	총 지원액 (백만 달러)
		어린이복지시설	가정 어린이집	성인복지시설	전체			
2015	4,181	1,419	526	74	2,019	3,009	148	3,307
2016	4,407	1,494	511	77	2,082	3,217	155	3,518
2017	4,530	1,485	485	79	2,049	3,240	151	3,537
2018	4,629	1,504	458	80	2,041	3,322	157	3,623
2019	4,706	1,529	435	82	2,045	3,424	153	3,713

자료: USDA(2020).

○ 2017년부터 식사 제공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2년 연속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음<그림 4-3>.

그림 4-3 연도별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 시설별 식사 제공 수

단위: 백만 끼니



자료: Oliveira, Victor(2019).

2.3.5. 여름식품서비스프로그램(Summer Food Service Program, SFSP)

- (지원대상) 저소득 지역의 18세 이하 저소득층 아이들(또는 연령 제한 없이 연방빈곤선 185%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에게 여름방학 동안 식사를 지원함.
- (추진체계)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USDA- FNS)의 프로그램이며, 주정부의 교육부가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주정부의 복지부나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의 지역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 2016년을 기준으로 4만 8,000개소에서 하루 2,7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혜택이 제공되었음.

2.4.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

- (도입) 2002년 농장안보 및 농촌투자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 따라 인디애나 주, 오하이오 주, 미시간 주, 아이오와 주, 그리고 뉴멕시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후 2008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운영됨.
- (목적) 어린 학생들에게 새롭고 색다른 품종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소개하는 것이며, 또한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소비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지원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음.
- (추진체계) 미국 USDA의 식품영양서비스국(FNS)에서 연방정부 차원으로 관리하고,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됨.
- (지원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의 무료급식과 할인급식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의 수가 전체 학생 수의 50% 이상인 초등학교)의 모든 재학생들을 지원대상자로 함.

○ (지원내용)

- 사업용 과일과 채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농산물이어야 하고, 사업예산 으로 구매한 과일과 채소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영양교육을 위해 Team Nutrition school을 설립하고, 미국 식품영양청(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일과 채소는 신선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함.
- 통조림이나 얼린 형태로 제공할 수 없고, 가공된 제품(과일 피자, 과일 주스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과일 및 채소는 학생 1인당 용량으로 개별 포장하여 제공하지 않고, Fresh Fruits and Vegetable Program Day를 정하여 다양한 과일을 진열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

○ (예산) '20년 1억 9,350만 달러(약 2,322억 원, 1,200원=\$1)〈표 4-12〉

○ 사업평가 결과

- 사업 지원을 받는 학교 학생의 과일 섭취량이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 학생의 섭취량보다 약 33.3% 많게 나타났고, 총에너지 섭취량은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
- 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교의 학생이 받지 않는 학교의 학생보다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음.
- 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교의 과일 및 채소 관련 교육시간이 받지 않는 학교에 비해 29% 길고, 섭취 홍보활동은 약 23% 증가함.
- 에너지 소비량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학생이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에 비해 1.2% 높고, 건강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Healthy Eating Index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2.5.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TEFAP)

- (도입) 1981년 가구에 의한 활용을 통해 농산물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USDA에 의해 구매된 농식품을 분배하기 위해 처음 승인됨.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농식품 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그런데 1988년 농식품 재고가 대부분 고갈되면서 “the Hunger Prevention Act of 1988”는 TEFAP을 위한 USDA Foods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승인함. 이 프로그램은 1990년 농업법에 따라 TEFAP으로 공식 명명됨.
- (목적) 고령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프로그램으로서, 대상자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긴급식품을 제공함.
- (추진체계) 미국 농무부는 영양가가 높고 고품질의 다양한 식품을 구매·가공·포장하여 식품 현물(USDA Foods)을 주정부 분배기관(distribution agency)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자금도 제공함. 개별 주가 지원받게 되는 식품의 양은 해당 주 내의 실업자 수 및 소득빈곤선 이하의 개인 수에 의해 결정
- (지원대상) TEFAP이 제공하는 USDA Foods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가정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식품을 분배하거나, 2) 공공급식을 준비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영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의 비영리 지역기관(nonprofit local agency)임.
- (지원품목) TEFAP을 위해 USDA가 구매하는 식품의 종류는 주별 선호와 농산물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름. 120가지가 넘는 영양가 높은 고품질 제품이 대상 품목이며, 통조림, 냉동/건조/신선한 과일/채소, 계란, 육류, 가금류, 생선, 견과류, 우유 및 치즈, 그리고 쌀, 시리얼, 파스타 등을 포함하는 통곡물류 등을 포함함.
- (중복 수혜) TEFAP 수혜자들은 아래와 같은 USDA의 프로그램으로부터도 식품/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NSLP(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WIC(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FDPIR(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 CSFP(commodity supplemental fod program)

○ (예산) 2019년 기준 8,467억 원의 예산으로 7억 8,600만 파운드의 농산물이 지원됨
 <표 4-12>.

표 4-12 연도별 TEFAP 제공량과 지원액

단위: 백만 파운드, 백만 달러

연도	총 제공량	식품 지원액	행정 자금	총 지원액
2015	671	451	74	525
2016	811	586	77	663
2017	824	578	82	660
2018	674	540	90	630
2019	786	621	128	749

주 1)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97.1백만 달러의 예산이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이중 317.5백만 달러는 식품구입용 예산이며, 나머지 79.63백만 달러는 주정부 및 지역기관의 행정지원금임. 승인된 예산으로 구매하는 USDA Foods 이외에도 농산물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USDA에 의해 구매되는 'bonus foods' 또한 분배되는데,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는 403.2백만 달러에 달함.

2) \$1 = 1,130원 기준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

2.6 농무부 기타 프로그램

2.6.1. 지역식품프로젝트(Community Food Projects, CFP)

○ 지역식품프로젝트는 미국 농무부 산하 국립식량농업원(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이 운영하는 자금지원 식품지원프로그램임.

- (지원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식품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는 지역식품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100% 매칭이 필수임).
- 2019년의 예산규모는 약 57억으로 책정되었음.

2.6.2. 농산물보충식품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

- 농산물보충식품프로그램은 연방빈곤선 130% 이하의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미 농무부가 주정부에게 식품과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정부의 식품지원프로그램임.
- (지원대상) 아동, 6세 이하의 영유아, 저소득층의 임산부나 모유수유 여성,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었지만, 2014년 2월 7일 이후 여성·영유아·아동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추진체계) 각 주정부의 보건, 사회서비스, 교육, 그리고 농림부서가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식품을 저장하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지역 기관에 식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함.

2.6.3. 고령자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SFMNP)

- (도입) 2002년 농업법에 의해 파머스마켓, 노점상, 지역사회 지원 관련 농업 프로그램은 과일, 채소, 꿀, 허브와 같은 식품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저소득 고령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고령자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SFMNP) 기금을 마련하였음.

- (추진체계) 주정부 기관은 연방정부로부터 고령자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음.
- (지원대상) 연방정부 빈곤선 기준의 185% 이하 가구소득을 가지는 60세 이상 고령자이며, 재정의 한계로 인해 일반적으로 선착순이나 지원자 중에서 무작위로 쿠폰이 제공됨.
- 2015년을 기준으로 43개 주 80만 명에게 월평균 32달러 상당의 쿠폰이 무상으로 지급되었음.

2.6.4.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 FTS)

- (도입)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1996/1997년 시범프로그램으로 시작된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은 2000년 농무부로부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공식적으로 지원받았고, 2004년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은 국립프로그램으로 법안에 명시되었음.
-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은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의 커뮤니티식품시스템청 (Office of Community Food Systems)이 운영하는 식품지원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이나 채소, 계란, 꿀, 육류나 콩 등 신선 농식품을 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함.
- 지역의 농식품 생산 농가는 안정적인 시장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16년을 기준으로 39개 주 74개 프로젝트에 대해 500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미국의 학교 중 42%인 4만 2,587개의 학교가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360만 명의 학생들에게 지역산 농산물이 제공되었음.

2.7 고령자법 관련 프로그램

- 「고령자법」에 근거한 식품지원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식사 형태로 식품을 지원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노인청이 주관하나 농무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⁴⁾

2.7.1. 집단영양프로그램(Congregate Nutrition Program, CNP)

- (도입) 1972년 미국 고령자법에 추가되면서 제도화 됨.
- (추진체계) 영양서비스자금을 할당받은 주정부 기관은 각 지역에서 집단영양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지역별 노인기관(Area Agencies on Aging, AAA)에 이를 제공함.
- (지원대상) 60세 이상 고령자와 그 배우자(연령제한 없음)이며, 이 외에도 ① 단체급식이 제공되는 노인용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60세 미만 장애인, ② 노인과 함께 거주하며노인과 급식 장소에 동행하는 장애인, ③ 급식지급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 (예산) 2017년 기준 7,620만 끼의 식사가 1,500만 명의 고령 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됨.

2.7.2. 가정배달영양프로그램(Home Delivered Nutrition Program, HDNP)

- (도입) 1978년부터 운영됨.
- (지원대상) 60세 이상 재가 노인과 그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재가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60세 미만 장애인

⁴⁾ 황지윤·심재은·김기량(2014) 참조.

- (추진체계) 영양서비스자금을 할당받은 주정부 기관은 각 지역에서 가정배달영양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지역별 노인기관에 이를 제공함.
- (현황) 가정배달식사의 비율은 1990년에 42%에서 2010년에 60%로 증가하였는데,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7년에는 1억 4,400만 끼니의 식사가 86만 명에게 제공되었음.

2.7.3.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Nutrition Services Incentive Program, NSIP)

-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은 단체급식이나 가정식배달 서비스를 관리 및 운영하는 미국의 각 주, 미국 영토, 인디언 보호구역의 단체에서 농무부 농식품을 구입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임.
-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대부분 현물 지원보다 현금 지원을 더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음.
- 2017년도에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은 6개 주와 5개 부족의 농산물 제공을 위해 28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였음.

2.7.4.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Grants to Native Americans: Supportive and Nutrition Services, GNASNS)

-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는 미국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노인들에게 영양 관련 식사나 식사배달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미국은 60세 이상의 약 94만 명의 노인들이 미국 원주민이나 알래스카 원주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는 성인돌봄, 가정식배달, 집안일, 교통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고령의 미국 원주민에게 지원함.

- 미국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거주관리청은 미국 원주민 노인들 중 43%가 단체급식 프로그램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드는 영양원비와 병원치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미국 원주민 사회의 문화적 전통에 부응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2017년을 기준으로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는 2,400만 끼의 식사와 2,500만 끼의 식사배달서비스를 원주민에게 제공하였음.

5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과제

1. 법률 및 제도 기반

1.1. 법률의 미비

- 농식품바우처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관련되나 구체적인 근거 법률이 없는 상황으로 본사업으로 이행하기에 앞서 법률기반 마련이 필요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등과 관련이 되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갖춰진 상황은 아님.

1.2. 법률의 분산

- 개별 지원제도별로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현행 농식품 지원제도는 2개의 기본법, 20여 개의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등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제도 간

연계가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그림 5-1).

-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식품 생산 및 소비, 복지, 영양 등 3대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음(이계임·김상효·김부영 2017).
- 「국민식생활·영양기본법(잠정)」 제정(안): 식품생산, 식품소비, 식생활, 영양, 복지, 건강 지원 유사 법들을 포괄하는 상위법 개념으로 가칭 「국민식생활·영양기본법」을 제정하는 안임. 각 부처의 관련 법률들을 총괄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함. 그러나 현존하는 법률들을 상위법으로서 총괄하게 될 기본법을 신규로 제정할 필요성 문제, 주무부처 설정 문제 등이 예상됨(이계임·김상효·김부영 2017).

그림 5-1 농식품 지원제도 관련 부처 및 법류



자료: 김상효(2019) 국회 토론회 발표자료

1.3. 제도 간 연계 미흡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프로그램들의 경우 담당하는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다양함.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친환경농업과, 식량정책과, 축산경영과, 원예경영과 등 여러 주무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제도 간 연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2. 유사·중복성의 판단⁵⁾

- 복수의 서로 다른 재정사업이 사업목표·사업내용·지원대상을 기준으로 2개 이상 유사한 경우는 유사사업, 복수의 서로 다른 재정사업이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이 동일한 경우는 중복사업임<표 5-1>, <표 5-2>.

표 5-1 유사·중복성의 판단

구분	대상	내용
유사	재정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목표 •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 • 유사한 수혜자를 대상
중복	재정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활동 • 동일한 수혜자에게 동일한 서비스 제공

자료: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⁵⁾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미국 회계감사원(GAO) 개념과 동일

표 5-2 우리나라 식품지원제도

소득	지원방식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고령자	
일반	현금						
	할인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현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저소득	현금	기초생활(식품비)					
		긴복복지지원(식품비)					
		기저귀조제분유(분유)					
	할인	양곡(쌀)					
		바우처(농식품)					
	현물	푸드뱅크(농식품)					
		우유급식(우유)					
		아동급식(식사)					노인급식(식사)
		영양플러스(농식품)			영양플러스(농식품)		
건강과일바구니							

자료: 직접 작성

2.1. 개별 식품지원제도의 사업목표

○ 재정사업의 유사·중복사업의 판단을 위해 개별 식품지원제도의 사업목표를 아래 표에 정리함<표 5-3>.

표 5-3 개별 식품지원제도의 사업목표

담당 부처	지원 제도	사업목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수준과 건강상태 개선 및 농산물 소비 활성화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미래세대의 건강확보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
	학교우유급식	학생 건강 증진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정부양곡할인	저소득층 쌀 지원 및 정부양곡관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긴급생계지원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아동급식지원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
	노인급식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결식 예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영양플러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 및 저출산 문제 해결
	건강과일바구니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유도
푸드뱅크	저소득층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	

자료: 직접 작성

2.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의 중복성

- 재정사업의 유사·중복사업의 판단을 위해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을 아래 표에 정리함(표 5-4).
단, 급여 유형은 유사·중복사업의 판단기준에 포함되지 않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표 5-4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담당 부처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사업 내용	급여분류
		소득 구분	지원 단위		
농림축산 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저소득층	가구	과일, 채소, 우유, 계란	바우처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일반	개인(임산부)	과일, 채소, 우유, 계란, 쌀 등	현물
	학교우유급식	저소득층	개인(학생)	우유	현물
	정부양곡할인	저소득층	가구	쌀	현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일반	개인(아동)	과일	현물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저소득층	가구	현금	현금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가구	현금	현금
	아동급식지원	저소득층	개인(아동)	급식	현물
	노인급식지원	저소득층	개인(노인)	급식, 도시락	현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개인(영유아)	조제분유	현물
	영양플러스	저소득층	개인(임산부, 영유아)	과일, 채소, 우유, 계란, 쌀 등	현물
	건강과일바구니	저소득층	개인(아동)	과일	현물
	푸드뱅크	저소득층	개인	과일, 채소, 우유, 계란, 쌀 등	현물

자료: 직접 작성

- 유사·중복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농식품바우처와 생계급여,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영양플러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과 건강과일바구니지원사업이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표 5-5).

표 5-5 유사·중복성 평가

사업목표 중복	지원대상 중복	사업내용 중복
농식품바우처 - 생계급여	농식품바우처 - 정부양곡할인	농식품바우처 -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농식품바우처 - 아동급식	농식품바우처 - 생계급여	농식품바우처 - 영양플러스
농식품바우처 - 노인급식	농식품바우처 - 긴급생계지원	농식품바우처 - 학교우유급식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영양플러스	정부양곡할인 - 생계급여	농식품바우처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 건강과일바구니	정부양곡할인 - 생계급여	농식품바우처 - 건강과일바구니
	학교우유급식 - 건강과일바구니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영양플러스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학교우유급식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정부양곡할인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건강과일바구니
		아동급식 - 노인급식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 영양플러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 건강과일바구니
		학교우유급식 - 영양플러스

자료: 직접 작성

-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와 지원대상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시범사업에서 지원대상 설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과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내용 상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과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유사·중복성이 있음. 실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통합운영의 검토가 필요함.